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9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민전・김기웅・이성권

이인선 · 김용태 · 조정훈

박덕흠 • 박수민 • 정연욱

인요한 · 김석기 · 박상웅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지정 및 규제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고등교육기관을 지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등)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광역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광역 지방자치단체,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등으로 구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지역

- 의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 ②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 교육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전 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에 제59조의2에 관한 업무 및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제59조의4(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지역 동반성장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 2. 제59조의7에 따른 학교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 변경 또는 취소

에 관한 사항

- 3.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등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 6. 지역의 고등교육 관련된 정책의 분석 · 평가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 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과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제59조의5(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 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법무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 3.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 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 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6(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 5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전문기관의 지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59조의7(규제특례) 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제59조의2의 안착과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신청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협의체 및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등 필요한 조건을 붙 일 수 있다.
- 1. 규제특례 신청 내용
- 2.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편익
- 3.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여야 한다.
-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는 경우 해당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8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① 규제특례를 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은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체 없이 그법령에 따른다.
-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8(규제특례의 변경·취소 등) ①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 례의 대상이 되는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화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7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7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제59조의7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장의2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u><신 설></u>	제59조의2(지역혁신중심 대학지
	원체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의 동반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을 지
	역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
	원체계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u>있다.</u>
<u><신 설></u>	제59조의3(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
	회 등) ① 제59조의2에 따른 지
	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
	<u>을</u>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
	자치도(이하 "광역 지방자치단
	체"라 한다)에 광역 지방자치단
	체, 학교, 지방교육행정기관, 공
	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

성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관할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다.

- ②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에 관한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한다)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그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전담기관에 제59조 의2에 관한 업무 및 사업,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 등교육기관과 지역의 협업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에 필 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 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 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 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59조의4(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59조 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대학 ·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 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 2. 제59조의7에 따른 학교에 대
 한 규제특례의 적용・변경 또
 는 취소에 관한 사항
- 3. 교육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및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지역 대학재정지원 관련 재

 정 확보에 관한 사항

- 5.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등 의 고등교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사항
- 6. 지역의 고등교육 관련된 정 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 및 지역 고등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원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조정·처리하거나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고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과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사항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제59조의5(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 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 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법무부차관,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 지 방자치단체의 장
- 3. 지역의 고등교육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 람
- ③ 지원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신 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⑦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6(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5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분석・평가・연구・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 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전문기관의 지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의7(규제특례) ① 「지방대 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 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

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 다)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제59조의 2의 안착과 학교의 발전에 필요 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하는 경우 제59조의3에 따른 지 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 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 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 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 부장관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 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 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 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 를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는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 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간 이 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 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 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 ⑤ 교육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제특례 여부 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 원위원회는 학생의 학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협의체 및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1. 규제특례 신청 내용
- 2. 해당 특례를 통한 학교, 학생및 교직원 등의 편익
- 3. 규제특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4.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환경·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 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심 의 결과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 여야 한다.
- ⑧ 교육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하는 경우 해당 규 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8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규제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

수하여야 한다.

① 규제특례를 받은 광역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성화 지 방대학의 장은 규제특례의 근거 가 되는 법령이 마련된 경우 지 체 없이 그 법령에 따른다.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특례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8(규제특례의 변경·취소등) ①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규제특례의 대상이되는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규제특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특성 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 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 만 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59조의7제1 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광 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특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9조의7 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 접 또는 제59조의7제1항에 따른 규제특례를 신청한 특성화 지방 대학의 장 또는 광역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규제 특례의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 이 예상되는 경우
- 2.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유발하는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취 소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

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규제특례 사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그 밖에 규제특례의 연장·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